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13호 2025. 5. 12.(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예천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5-57호)
- 은풍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테마형) 시행계획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5-58호)

공 고

- 2025년 예천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2차 모집 공고(예천군 공고 제2025-772호)
-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5-784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예천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예천읍 남본리 135-1번지 일원 예누리 문화공원의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2일
예 천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간시설

1)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예누리 문화공원	문화공원	예천읍 남본리 135-1번지	21,960	감1,033	20,927	경상북도 고시 제2022-287호 (2022.10.6.)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① 예누리 ② 문화공원	• 문화공원 변경 - A : 21,960㎡ → 20,927㎡	• 기반시설 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구역 일부 축소(경미한 변경)

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총괄표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면적	건축물		면적	건축물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면적 (㎡)
계		21,960	2	80	80	20,927	1	30	30	부지면적 : 감) 1,033㎡ 바닥면적 : 감) 50㎡ 연면적 : 감) 50㎡
소 계 (시 설 른)		10,303 (46.9%)	-	-	-	10,123 (48.4%)	-	-	-	부지면적 : 감) 180㎡
기 반 시 설	합 계	5,906	-	-	-	5,840	-	-	-	부지면적 : 감) 66㎡
	도 로	3,563	-	-	-	3,505	-	-	-	부지면적 : 감) 58㎡
	광 장	2,343	-	-	-	2,335	-	-	-	부지면적 : 증) 8㎡
조 경 시 설		1,765	-	-	-	1,733	-	-	-	부지면적 : 감) 32㎡
휴 양 시 설		670	-	-	-	567	-	-	-	부지면적 : 감) 103㎡
운 동 시 설		577	-	-	-	577	-	-	-	-
편 익 시 설		1,203	1	50	50	1,200	-	-	-	부지면적 : 감) 3㎡ 바닥면적 : 감) 50㎡ 연면적 : 감) 50㎡
관 리 시 설		182	1	30	30	206	1	30	30	부지면적 : 증) 24㎡
녹 지		11,657	-	-	-	10,804	-	-	-	부지면적 : 감) 853㎡

2) 세부시설 결정조서(변경)

구분		시 설 명	부호	위치	면적(㎡)	규모 (동)	건축물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기정	부지면적	-	-	21,960	2	80	80	-
	변경	부지면적	-	-	20,927	1	30	30	부지면적 : 감) 1,033㎡ 바닥면적 : 감) 50㎡ 연면적 : 감) 50㎡
기 반 사 설	기정	소 계	-	-	5,906	-	-	-	-
	변경	소 계	-	-	5,840	-	-	-	부지면적 : 감) 66㎡
	기정	도 로	-	전지역	3,563	-	-	-	-
	변경	도 로	-	전지역	3,505	-	-	-	부지면적 : 감) 58㎡
	기정	광 장	5개소		2,343	-	-	-	-
	변경	광 장	5개소		2,335	-	-	-	부지면적 : 감) 8㎡
	기정	기차소리마당	1-1	예천읍 남본리 261-5일원	371	-	-	-	-
	변경	기차소리마당	1-1	예천읍 남본리 261-5일원	234	-	-	-	부지면적 : 감) 137㎡
	기정	포트광장	1-2	예천읍 남본리 135-1일원	410	-	-	-	-
	기정	커뮤니티광장	1-3	예천읍 남본리 136-3일원	518	-	-	-	-
	변경	커뮤니티광장	1-3	예천읍 남본리 136-3일원	579	-	-	-	부지면적 : 증) 61㎡
	기정	스탠드광장	1-4	예천읍 청북리 760-3일원	718	-	-	-	-
	변경	스탠드광장	1-4	예천읍 청북리 760-3일원	786	-	-	-	부지면적 : 증) 68㎡
	기정	물길광장	1-5	예천읍 청북리 760-3일원	326	-	-	-	-

구분		시 설 명	부호	위치	면적(㎡)	규모 (동)	건축물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조경 시설	기정	소 계	6개소		1,765	-	-	-	-
	변경	소 계	6개소		1,733	-	-	-	부지면적 : 감) 32㎡
	기정	생태초화원	2-1	예천읍 남본리 135-1일원	181	-	-	-	-
	기정	포켓가든	2-3	예천읍 남본리 135-1일원	121	-	-	-	-
	기정	작가정원	2-4	예천읍 남본리 136-3일원	294	-	-	-	-
	기정	화이트가든	2-5	예천읍 남본리 99-1일원	449	-	-	-	-
	기정	레드가든	2-6	예천읍 남본리 99-1일원	386	-	-	-	-
	기정	계절초화원	2-7	예천읍 남본리 136-3일원	334	-	-	-	-
	변경	계절초화원	2-7	예천읍 남본리 136-3일원	302	-	-	-	부지면적 : 감) 32㎡
휴양 시설	기정	소 계	4개소		670	-	-	-	-
	변경	소 계	3개소		567	-	-	-	부지면적 : 감) 103㎡
	폐지	전망쉼터	3-1	예천읍 남본리 135-1일원	62	-	-	-	부지면적 : 감) 62㎡
	기정	문화쉼터	3-2	예천읍 남본리 99-1일원	67	-	-	-	-
	변경	문화쉼터	3-2	예천읍 남본리 99-1일원	49	-	-	-	부지면적 : 감) 18㎡
	기정	힐링쉼터	3-4	예천읍 남본리 99-1일원	333	-	-	-	-
	변경	힐링쉼터	3-4	예천읍 남본리 99-1일원	310	-	-	-	부지면적 : 감) 23㎡
	기정	위요쉼터	3-5	예천읍 청북리 761-7일원	208	-	-	-	-

구분		시 설 명	부호	위치	면적(㎡)	규모 (동)	건축물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운동 시설	기정	소 계		1개소	577	-	-	-	-
	기정	체력단련장		4-1	예천읍 청북리 761-7일원	577	-	-	-
편의 시설	기정	소 계		2개소	1,203	1	50	50	-
	변경	소 계		2개소	1,200	-	-	-	부지면적 : 감) 3㎡ 바닥면적 : 감) 50㎡ 연면적 : 감) 50㎡
	기정	물길쉼터	5-1	예천읍 남본리 99-1일원	663	1	50	50	-
	변경	물길쉼터	5-1	예천읍 남본리 99-1일원	663	-	-	-	바닥면적 : 감) 50㎡ 연면적 : 감) 50㎡
	기정	주차장	5-2	예천읍 남본리 136-3일원	540	-	-	-	-
	변경	주차장	5-2	예천읍 남본리 136-3일원	537	-	-	-	부지면적 : 감) 3㎡
관리 시설	기정	소 계		1개소	182	1	30	30	-
	변경	소 계		2개소	206	1	30	30	부지면적 : 증) 24㎡
	기정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6-1	예천읍 남본리 99-1일원	182	1	30	30	-
	변경	화장실	6-1	예천읍 남본리 99-1일원	182	1	30	30	명칭변경
	신설	재활용쉼터	6-2	예천읍 남본리 157-9일원	24	-	-	-	부지면적 : 증) 24㎡
녹지	기정	녹 지		전지역	11,657	-	-	-	-
	변경	녹 지		전지역	10,804	-	-	-	부지면적 : 감) 853㎡

다. 도로 결정조서(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 계			1.5~10.0	1,511	3,563	-	공원전지역	공원전지역	-
변경	소 계			1.0~10.0	1,466	3,505	-	공원전지역	공원전지역	감) 58㎡
기정	소로	3	1	2.0	187	374	산책로	예천읍 남본리 311-5일원	예천읍 남본리 135-1일원	-
기정	소로	3	2	2.65	222	589	연결로	예천읍 남본리 261-5일원	예천읍 남본리 135-1일원	-
기정	소로	3	8	10.0	43	429	진입로	예천읍 남본리 306-2일원	예천읍 남본리 306-2일원	-
변경	소로	3	8	10.0	42	421	진입로	예천읍 남본리 306-2일원	예천읍 남본리 306-2일원	감) 8㎡
기정	소로	3	10	2.65	466	1,235	연결로	예천읍 남본리 99-1일원	예천읍 청북리 761-7일원	-
변경	소로	3	10	2.65	466	1,240	연결로	예천읍 남본리 99-1일원	예천읍 청북리 761-7일원	증) 5㎡
기정	소로	3	12	1.5	468	702	산책로	예천읍 남본리 99-1일원	예천읍 청북리 761-7일원	-
변경	소로	3	12	1.5	468	706	산책로	예천읍 남본리 99-1일원	예천읍 청북리 761-7일원	증) 4㎡
기정	소로	3	13	1.5	12	18	진입로	예천읍 남본리 261-5일원	예천읍 남본리 261-5일원	-
변경	소로	3	13	1.5	14	21	진입로	예천읍 남본리 261-5일원	예천읍 남본리 261-5일원	증) 3㎡
기정	소로	3	14	3.5	6	22	진입로	예천읍 남본리 135-1일원	예천읍 남본리 135-1일원	-
기정	소로	3	15	2.5	3	7	진입로	예천읍 남본리 135-1일원	예천읍 남본리 135-1일원	-
변경	소로	3	15	2.1	5	11	진입로	예천읍 남본리 135-1일원	예천읍 남본리 135-1일원	증) 4㎡
폐지	소로	3	16	2.0	34	68	연결로	예천읍 남본리 135-1일원	예천읍 남본리 135-1일원	감) 68㎡
기정	소로	3	17	1.5	31	47	연결로	예천읍 남본리 135-1일원	예천읍 남본리 135-1일원	-
변경	소로	3	17	2.0	36	83	연결로	예천읍 남본리 135-1일원	예천읍 남본리 196-35일원	증) 36㎡
폐지	소로	3	18	2.0	11	22	진입로	예천읍 남본리 135-1일원	예천읍 남본리 196-35일원	감) 22㎡
폐지	소로	3	19	1.5	3	5	진입로	예천읍 남본리 99-1일원	예천읍 남본리 99-1일원	감) 5㎡
기정	소로	3	20	2.0	9	18	진입로	예천읍 남본리 99-1일원	예천읍 남본리 99-1일원	-
변경	소로	3	20	2.0	9	18	진입로	예천읍 남본리 99-1일원	예천읍 남본리 99-1일원	위치변경
기정	소로	3	21	1.5	8	12	진입로	예천읍 청북리 876-2일원	예천읍 청북리 876-2일원	-
변경	소로	3	21	2.0	6	15	진입로	예천읍 청북리 876-2일원	예천읍 청북리 876-2일원	증) 3㎡
폐지	소로	3	22	2.0	8	15	진입로	예천읍 청북리 876-2일원	예천읍 청북리 876-2일원	감) 15㎡
신설	소로	3	23	1.0	5	5	진입로	예천읍 남본리 99-1일원	예천읍 남본리 99-1일원	증) 5㎡

※ 위 도로는 군계획시설이 아닌 공원 내 도로용지 구분 표시임.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및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 아래 결정도는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3.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346) 및 산림녹지과(☎054-650-6866)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기 정



변 경



[illegible]

Topographic map showing a proposed road project in a mountainous area. The map includes contour lines, elevation points, and a color-coded project area. A scale bar at the bottom left indicates 0 to 200m. A north arrow is located in the top right corner. A table in the bottom right corner provides project details.

구분	시정	부지	면적(㎡)	지정면적(㎡)	비율	비고
총합	면적	부지	20,000	10,000	50%	
	지정면적	면적	10,000	10,000	100%	
	지정면적	면적	10,000	10,000	100%	
	지정면적	면적	10,000	10,000	100%	
지정면적	지정면적	면적	10,000	10,000	100%	
	지정면적	면적	10,000	10,000	100%	
	지정면적	면적	10,000	10,000	100%	
	지정면적	면적	10,000	10,000	100%	
면적	면적	면적	10,000	10,000	100%	
	면적	면적	10,000	10,000	100%	
	면적	면적	10,000	10,000	100%	
	면적	면적	10,000	10,000	100%	

예천군 고시 제 2025 - 58호

은풍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테마형) 시행계획 고시

은풍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테마형)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 5. 12.

예 천 군



1. 사업의 명칭 : 은풍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테마형)
2. 사업의 목적
 - 방치된 구)군립은풍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의 부족한 청소년 문화복지, 돌봄 교육을 위한 활력증진 공간 확충
3. 위 치 :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로90 일원
4. 사 업 비 : 500백만원(국비 350, 지방비 150)
5. 주요 사업내용
 - 청소년돌봄센터 조성(A=139.9㎡)
6.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
7. 사업시행기간 : 2023년 ~ 2025년(3년간)

예천군 공고 제2025-772호

2025년도 예천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2차 모집 공고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이웃 간 상생하는
건실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예 천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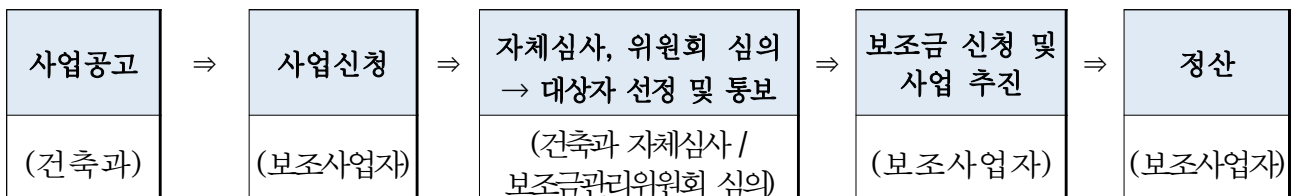
2025년도 예천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모집 공고

I 사업 개요

- 지원근거 :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의2
- 지원대상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희망단지 ※ 미신청단지 우선지원
- 예산총액 : 50,000천원
 - 가. 최초 참여 단지 : 총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 나. 2회차 참여 단지 : 총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 다. 3회차 참여 단지 : 총 사업비의 30%이상 자부담
 - 라. 4회차 참여 단지 : 총 사업비의 40%이상 자부담
 - 마. 5회차 참여 단지 : 총 사업비의 50%이상 자부담
 ※ 2024년도 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는 자부담 비율 10% 경감
- 사업내용 : 단지 별 희망하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유형	프로그램 예시
소통 / 주민화합	① 주민축제 ② 소통 및 의견 나누기 ③ 품앗이 및 문화교류 ④ 소식지 및 홈페이지 ⑤ 아파트 신문 발간
친환경 실천/체험	① 친환경제품만들기 ② 텃밭 가꾸기 ③ 녹색장터 ④ 에너지절약교육 / 생활용품공유 ⑤ 체험활동
교육 / 보육	① 취미교실 ② 반찬품앗이, 이유식 만들기 ③ 자녀교육 ④ 보육 / 공동육아
문화 강좌	① 운동, 건강교실(GX, 헬스, 요가) ② 어학교실(영어, 한문) ③ 음악교실 ④ 교양강좌
기타 활동	① 이웃돕기 ② 봉사활동 ③ 재능기부 ④ 입주민과의 소통의장 운영
혼 합	2개 이상의 프로그램 혼합

5. 추진절차



※ 정산 이후 내부 평가를 통해 최우수 단지를 선정하여 차년도 자부담 비율 10%경감
(평가 기준: [별지 제9호 서식]참고)

Ⅱ 사업 신청

1. 신청기간 : 2025. 5. 12.(월) ~ 2025. 5. 30.(금) 17:00 마감
2. 신청방법 :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3. 접수장소 :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건축과 공동주택팀(☎054)650-6947)
4. 신청서류
 - 가.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나. 예천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 다. 사업계획서 1부.
 - 라.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변경) 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신청서 1부.
 - 마. 입주자대표회의록 1부.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 수리 및 자부담 방안에 대한 의결 내용 포함
5. 참고자료
 - 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예산편성 기준 1부.
 - 나. 공동체 활성화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표 1부.

Ⅲ 사업 선정

1. 선정 절차
 - 가. 1차 심사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건축과 자체 검토
 - 나. 2차 심사 : 보조사업 선정 심사기준에 따른 군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2. 결과 발표 : 선정단지 개별통지(2025. 6월 예정)

Ⅳ 유의사항

1.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조치 됨
 - 가.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나.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다.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단지 당 단일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사업 응모를 원칙으로 함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서

공모사업명		2025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사 업 개 요	신청단지	단 지 명			동 수	
		주 소			세 대 수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사 업 비	내 역	총 계		보조금	자부담	
		천 원(100%)		천 원(%)	천 원(%)	
연 락 처	성 명 (실무담당자)			주 소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FAX		
예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공동체활성화단체장 : (인) 입주자대표회장 : (인) 관리사무소장 : (인)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1부. 3. 입주자대표회의록 1부.						

예천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개 인(단 체)명				회원수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사 업 내 용	분 야					
	신 청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장 소	
	총소요사업비				지원신청액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타참고사항(단체일 경우 단체소개서) 등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내용

가. 사업기간 :

나. 사 업 량 :

다. 지원근거 :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의2

라. 주요내용 :

4. 기대효과 :

5.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 [별지 제7호 서식]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 바람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변경)신고서				공동체지원이사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변경)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택		
		동, 호수			핸드폰		
	구성 내용	구성목적					
		구성일시					
		구성인원					
활동내용							
사업 지원	사업 내 용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기간					
		추진방법					
		사업비					
		기대효과					
준수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 ○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신청과 지원, 지출 및 보고 등의 절차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구체적인 사업비의 사용 용도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입주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기업체로부터의 금전기부 등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제한할 수 있음.						
별첨		회칙, 회원명부, 사업계획서(관련자료 포함), 의결서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사업비 지원 신청서					
신청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 번호	자택	
	동, 호수			핸드폰	
신청 내용	신청 사업비				
	의견 및 특이사항				
준수사항		○ 사업비는 당해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지원된 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며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별첨		- 세부 사업계획서(관련자료 포함) - 의결서(사업비 지원 신청에 대한 총회 의결내용)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며 사업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					

공동체 활성화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표

신청 단지		사 업 명	
-------	--	-------	--

심사 항목	배 점	내 용	상세 배점	평가 점수		
총 계	100					
취지 적합성	25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가능한 사업 여부 -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 향상 가능한 양질의 사업 여부	높음: 25 보통: 20 낮음: 15			
실행 가능성	25	- 응모 프로그램 및 계획의 실현 가능성 여부 - 사업 목적 및 내용의 구체화 및 명확화 여부 - 책정 예산의 타당성 및 현실성 여부	높음: 25 보통: 20 낮음: 15			
주민 참여성	25	- 입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사업 여부 - 특정 연령층에 편중된 사업 지양 여부	높음: 25 보통: 20 낮음: 15			
사업 지속성	25	- 일회성, 단순 소비성 사업 지양 여부 - 장기적 및 지속적 규모로 확대 가능한 사업 여부	높음: 25 보통: 20 낮음: 15			
종합 의견						
지원 금액	신 청 액(천원)			부서 검토액(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예산편성 기준

보조비목	편성 기준
- 홍보비 - 인쇄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실비정산 - 예시: 홍보물, 홍보용품, 현수막, 기념물
- 물품구입비 - 사무용품구입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실비정산 ※ 자산성 물품은 구매 불가(예시: 컴퓨터, TV 등)
- 단기임차료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등 임차 비용 - 실비정산
- 시외여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가능 - 실비 정산 - 예시: 유류비, 주차비, 통행요금, 교통비 - 숙박비: 1인 1박 5만원 기준으로 편성
- 식비 - 간담회비	- 식비: 1인 1식 9천원 이내 편성 - 다과비: 1인 4천원 이내 편성 ※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자 식대, 다과비 또는 주류 구매로는 편성 불가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아 증액 가능
- 외래 강사료	- 지급단가: [별지 제8호 서식]참고 - 1인당 1일 최대 3시간만 인정(기본시간 1시간 + 초과시간 2시간)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월간 지급 강사료가 125,000원 초과시 원천징수 후 지급
- 공연비	- 5인 이하: 50만원 - 6-10인 이하: 60만원 - 11인 이상: 70만원 ※ 월간 개인에게 지급 되는 금액이 125,000원 초과시 원천징수 후 지급 ※ 공연기획사와 거래시 부가세가 포함된 지급한도금액임
- 시설공사비	- 실비정산 - 예시: 공간 조성, 공연 무대 설치 ※ 행위허가, 신고대상이 아닌 건에 한함
- 체험비	- 실비정산 - 예시: 현장학습 입장료

☐ 보조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천군 관내 사용 원칙

※ 불가피한 경우: 금액의 차이가 현격하게 많이 나거나, 관내에서 해당 품목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보조금 정산에 필요한 세부 증빙서류는 보조금 교부시 별도 안내

☐ 보조 비목에 없는 항목에 대한 지출의 경우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054-650-6947)

강사료 예산 편성 기준

비 목	등 급	대 상(전·현직)		지급한도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강 사 비	특급 (전·현직)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 차관급) - 국회의원 - 기초자치단체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장	- 대기업 회장 - 전직 공기업 대표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경상북도 사전협의)	300,000	200,000 (매시간)	
	1급 (전·현직)	- 대학의 교수 - 판·검사 - 지방의회의원 - 언론인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4급 이상 공무원	- 변호사, 의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유명 예술인, 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	250,000	120,000 (매시간)	
	2급 (전·현직)	- 대학 강사 등 겸임교수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150,000	80,000 (매시간)	
	3급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 3년 이상 경력자	100,000	50,000 (매시간)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80,000	40,000	
	5급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해당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분야의 1년 이상 경력자		60,000	30,000 (매시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최우수단지 선정 평가표

단 지 명			진행 사업명	
심사 항목	배 점	내 용	상세 배점	평가 점수
총 계	100			
주민 참여성	25	· 입주자등의 참여도 · 참여 유도(단지 내 행사 연계 등)	높음: 25 보통: 15 낮음: 5	
지역 활성화	20	· 예천군 관내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출 비율	60% 이상 : 20 50 ~ 59% : 15 40 ~ 49% : 10 30 ~ 39% : 5 29% 이하 : 0	
보조사업 관리	20	·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 ·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해결 여부 ·	우수 : 20 보통 : 10 미흡: : 0	
단지내 협업	15	· 공동체 활성화 단체 등 2개 이상 단체 협업	우수 : 15 보통 : 10 미흡: : 5	
입주자 대표회의 이수율	10	·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이수율 기준	80 ~ 100% : 10 70 ~ 79% : 8 60 ~ 69% : 4 51 ~ 59% : 2 50% 이하 : 0	
단지 내 민원 여부	10	· 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련 민원제기 여부(당해년도 발생민원 대상)		
사업 진행 민원제기	-30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인근 주민 및 입주민들의 민원 제기 여부	최대 -30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예 천



1. 제정이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과 기능(안 제4조)

- 요양, 급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의 운영

○ 조리원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 그 밖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이용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기준 이용료 : 1주 90만원, 2주 180만원, 3주 270만원

○ 감면율 : 예천군 관내 40%, 경상북도 도내 10%, 취약계층 50%,
청소년 산모 100%

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위탁 운영 기관

- 경상북도 소재 지방의료원 및 의료기관
- 조리원 신고를 필한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한 경상북도 주민등록을 둔 자
-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상북도 소재 기관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라. 수탁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통한 수탁기관 결정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1) 전자우편(이메일) : yc1223@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군보건소

3) 팩스 : 054-650-80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보건소 (전화: 054-650-805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5조의 17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인 영아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예천군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시책을 마련 및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와 기능)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모와 신생아에게 요양, 급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4. 조리원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산모나 출생아 산후조리원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대상에 대한 조사
4. 공공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과 안전 확보 방안
5.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대상 등) ①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중 다음 각호의 대상자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8.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10.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11. 청소년 산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인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정원에 미달할 경우, 산모 또는 산모 배우자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등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등에 해당하는 산모나 신생아
3. 시설을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
4.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

은 별지 1에 따른 이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1. 경상북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
: 100분의 10 이내 범위
2. 예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
: 100분의 40 이내 범위
3. 예천군민 중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이내 범위
4. 예천군민 중 제6조제2항제11호인 경우 : 전액(단, 이용료에 한함)
 -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 비율 및 방법과 절차 등 은 군수가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상북도 소재 지방의료원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경상북도 소재 의료기관

3.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신고를 필한 시설을 3년이상 운영한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상북도 소재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 운영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연장 시 별지 제 3호 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군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 등) 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할 기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예천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평가를 위하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예천군 물품 관리조례」,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구분	1주(7일)	2주(14일)	3주(21일)	비 고
금액	90만원	180만원	270만원	1주당 90만원씩 추가

※ 비고

1. 이용료는 산모나 산모와 영아 한 명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실 기본요금은 128,570원/1일로 한다. 다만, 총 이용금액의 1,000원 미만은 절사 한다.
2. 이용료 감면 대상일 경우 감면 일수는 14일로 하며, 그 이후에는 사용 일수에 따라 기본요금을 납부한다.
3. 쌍생아 등을 출산할 경우에는 늘어나는 영아 한 명당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위 이용료 외 산후조리에 필요한 소모용품 및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 산후조리비용 감면 신청서

(접수번호 :)

감면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출 생 아	성명		성별	
	분만 산부인과			
	소재지		출생일자	
감면대상종류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예천군수 귀하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신청서				
신청인			연락처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탁기간		. . 부터 . . 까지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없음	

